

강 사 분 류 표

(제9조 관련)

구분	대 상
특별강의	· 국내·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특별강사 (Ⅰ)	· 전·현직 부총리(급),장·차관(급) 대학교 총장(급) ·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특별강사 (Ⅱ)	· 전·현직 대학학장(급) · 전·현직 2급 이상의 공무원 · 전·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· 준장이상 군인 ·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일반강사 (Ⅰ)	· 전·현직 3급 이상의 공무원 · 전·현직 소방준감 또는 경무관급 공무원, 대령급 군인 · 중앙소방학교 현직 지도교수 ·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일반강사 (Ⅱ)	·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(Ⅰ), (Ⅲ)이외의 강사
일반강사 (Ⅲ)	·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· 전·현직 소방위 또는 경위이하의 공무원 · 대위 이하의 군인
보조강사	· 외래실습강사 · 실기실습조교